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64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03월 31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04월 02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조례안의 개요

-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,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립과학관 명칭 및 위치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추가(안 제3조)
- 나. 조례 일부개정(' 24.5.20.)에 따른 19세 이하 관람료 면제를 본문에 명문화하여 현행화(안 제6조제1항제3호)
- 다.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신설(안 제6조제1항제13호)
- 라. 권한의 위임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으로 명확화(안 제18조)
- 마. 법령·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6조제1항제9호, 제6조제2항제1호, 제16조 및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3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5. 3. 5. ~ 3. 2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III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병역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과학관 관람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,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에 따른 조례 정비 및 현행화를 위해 제출됨.

2.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운영 현황

-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“과학관”)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·운영 중인 공공시설임(개관 2017.05.19.).

<과학관 개요>

- 위 치 :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
- 규 모 : 부지면적 25,875㎡ / 연면적 12,376㎡ / 전시면적 4,260㎡
- 총공사비 : 423억 4천 9백만원(국비 70%, 시비 30%)
- 예산현황 : 약 46억 6천 1백만원(2024년 기준)
- 주요시설

층 별	면적(㎡)	주 요 시 설
옥 상	3,429.97	하늘마루, 데크쉼터, 태양광 시설
지상 3층	1,528.09	기획전시실(X), 상설전시실(R), 북&톡, 교육실(1,2,3), 교육지원 행정사무실
지상 2층	3,429.97	상설전시실(B,O,Y), 3D 스페이스, 천체관측실, 사무실
지상 1층	4,217.34	상설전시실(G,Y), 사이언스홀, 안내/매표소, 메이커스튜디오(별관)
지하 1층	3,201.02	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, 직원휴게실, 샤워실

- 이후 AI, VR/AR 등 최신 로봇과학기술 체험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분관으로 개관되어 운영 중임(개관 2024.08.20.).

<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요>

- 위 치 :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
- 규 모 : 부지면적 2,500㎡ / 연면적 7,308㎡ / 전시면적 1,260㎡
- 총공사비 : 416억 9천 7백만원(시비 100%)
- 주요시설

층 별	면적(㎡)	주 요 시 설
지상 4층	856.46	기획전시실, 오픈랩, 오픈스페이스
지상 3층	1,154.19	상설전시실, 아뜰리에
지상 2층	1,081.22	다목적실 1,2,3, 사무실, 세미나실
지상 1층	995.38	로비, 안내데스크, 편의시설 등
지하 1층	1,427.41	주차장, 방재실
지하 2층	1,793.73	주차장, 기계, 전기실, 수장고

- 한편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¹⁾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, 현재 동 조례 별표에 따라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2천원을 징수하고 있음.
- 동 과학관의 개관 후 2025년 2월까지의 총 관람객은 82만 4천 635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약 6억 1천 8백여만원임.

<과학관 연도별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 현황>

(단위 : 명, 천원)

연도	2021년 이전	2021	2022	2023	2024	2025.02.	합계
관람객수	412,623	33,717	66,589	99,871	169,619	42,216	824,635
관람료 수입	347,610	38,218	70,394	79,018	63,573	19,232	618,045

※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포함

- 그리고 동 조례 제6조(관람료 감면)는 과학관의 관람료 면제 및 감면(50%)대상을 정하고 있으며, 이를 근거로 개관 이후 2025년 2월까지 총 38만 2천 18명이 약 5억 2천 5백만원의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았음.

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과학관 개관 이후 무료 관람객 현황>

(단위 : 명, 천원)

	19세 이하	다둥이	장애인	경로우대	국가유공	시장인정	기타	합계
관람객	239,264	28,562	6,865	5,400	804	29,403	71,720	382,018
비율	62.6	7.5	1.8	1.4	0.2	7.7	18.8	100.0

※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포함

※기타: 공무수행, 서울특별시명예시민, 20명 이상 단체 인솔자 등

3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가. 과학관 명칭 및 위치 현행화(안 제3조)

- 안 제3조(명칭 및 위치)는 지난 2024년 8월에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.

현행	개정안
제3조(명칭 및 위치)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립과학관"이라 하고,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에 둔다.	제3조(명칭 및 위치)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서울특별시립과학관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(하계동) 2.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(창동)

나. 19세 이하 관람료 면제 규정 명문화(안 제6조제1항제3호)

-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과학관 관람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현행의 ‘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’에서 ‘19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, 이는 현재 별표로

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료 면제 규정을 본문에 명문화하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 4. ~ 8. (생략) 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 10. ~ 12. (생략) <u><신설></u> 13. (생략)	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19세 ----- 4. ~ 8. (현행과 같음) 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----- ----- 수급자 10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
- 과학관은 과학분야 체험 및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로 청소년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에 방문하는 미성년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미 청소년 및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한바 있음.
- 그러나 조례 개정시 본문의 관람료 감면 조항(제6조제1항제3호)을 개정하지 않고 관람료에 관한 별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본문과 별표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.

<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별표 >

[별표] <개정 2024. 5. 20.>

관람료 (제5조 관련)

구 분	금 액		비 고
	개 인	단체 (20명 이상)	
어 른	2,000원	1,000원	20세~64세

- 이에 현행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의 관람료 면제를 조례 본문에 명문화하여 현행화하는 것은 시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과학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임.

다.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료 면제(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)

- 안 제6조는 관람료 면제 대상에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제대군인법”)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‘장기복무 제대군인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6세</u>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사람	3. 19세 -----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	9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----- ----- 수급자
10. ~ 12. (생략)	10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(생략)	<u><신설></u> 13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 군인 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----------	--

- 한편 동 과학관의 관람료는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체적인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.
- 또한 「제대군인법」 제23조제1항²⁾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6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「제대군인법」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 하겠음.
- 한편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부재함.

<서울시 제대군인 지원 사업>

- ▶ 청년³⁾정책 참여시 의무복무 기간을 연령 상한하여 적용(최대 3년)
- ▶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, 영웅청년주택⁴⁾ 공급
- ▶ 병역명문가⁵⁾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및 주차장 이용료 20% 감면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"청년"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(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(정의))

"영웅청년주택"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 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에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~50%로 거주할 수 있다.

"병역명문가"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,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(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)

- 따라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병역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가 면제될 경우 약 124명의 관람객에 해당하는 24만 8천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2024년 과학관 관람료 수입(6,357만원)의 약 0.39%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<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료 감면에 대한 비용추계 >

- 과학관 성인 관람객 방문비율 : 1.03%
 - 20~64세 관람객(67,176명) / 20~64세 서울시 인구(6,540,000명) = 1.03%
 - ※ 2024년 시립과학관 20~64세 관람객 수 : 67,176명
 - ※ 2024년 서울시 20~64세 인구 수 : 6,540,000명
-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객/년 추정 : 12,000명 × 1.03% = 124명/년
 - ※ 2024년 서울시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 : 12,000명
- 비용추계 산식
 - 연간 관람료 감소액 : 124명 × 2,000원 = 248,000원

-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관람료 면제와 관련하여,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⁶⁾와 세종특별자치시⁷⁾가 박물관, 목포시가 과학관·박물관·문학관⁸⁾에 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음.
- 참고로 서울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과학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박물관, 서울시립미술관,

강원특별자치도디엠제트박물관

세종특별자치시시립민속박물관

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, 목포자연사박물관, 목포근대역사관, 목포문학관

서울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, 김규남 의원은 동 시설들에 대하여 장기복무, 중기복무, 의무복무를 모두 포함한 제대군인의 이용료 감면 조례안을 발의하였음.

<서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현황>

시설명 (감면 내용)	발의(제출)자	감면 대상	심사 결과
서울시립박물관 (무료)	김규남 의원	제대군인	- 대안반영폐기 - 대안: 장기·중기복무 제대군인 감면
	서울시장	장기복무 제대군인	
서울시립미술관 (무료)	김규남 의원	제대군인	- 미상정
	서울시장	장기복무 제대군인	
서울시립체육시설 (50% 할인)	김규남 의원	제대군인	- 대안반영폐기 - 대안: 장기·중기복무 제대군인 감면
	서울시장	장기복무 제대군인	

-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과는 별개로, 과학관은 그 특성상 관람객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과학관이나 학생 대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학관의 관람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신현두	2180-8055